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11. 2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11. 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11.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 제안이유

○ 2001. 8. 14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여자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출산휴가기간을 조정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함(안 제23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0호
의결년월일	2001. 11. 13 (제91회)

제출년월일 : 2001. 11.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2001. 8. 14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여자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출산휴가기간을 조정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함(안 제23조제2항)

□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제23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연가일수) ① 및 ②(생략) ③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생략)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	제18조(연가일수) ① 및 ②(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5항····· ····· 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90일……